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6
----------	------

발의연월일 : 2024. 1. 8.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곽동환 의원,
전홍배 의원

1. 개정이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대학생을 추가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정액 지급 규정, 장학생의 선발 기준 명확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에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등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반영하여 개정사항 정비
- 나. 장학생 지급대상 확대 및 선발 기준 명확화(안 제2조 및 안 제4조)
- 다.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7조)
- 라. 장학금 환수 근거 마련(안 제8조)
- 마. 장학기금 특별회계 규정 삭제(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5.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군수에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발)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년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실적
2. 이장 근속기간 및 상훈
3.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군·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중 “년간”을 “연간”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를 “퍼센트”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100만원 이내

제7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그 밖에 민간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의 제목 “(지급의 정지)” 를 “(지급의 정지 및 환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자가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② 읍·면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u></p> <p><u>제2조(장학생의 자격)</u> 장학생은 <u>리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u>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또는 학년말 교과목별 학업성적중 전과목의 과반수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u></p> <p><u><신 설></u></p> <p><u><신 설></u></p> <p><u>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u></p> <p><u>3. 균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는 리장의 자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 1년 이상 근속한 이장-----</u></p> <p><u>-----</u></p> <p><u>-----</u></p> <p><u>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u></p> <p><u>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u></p> <p><u>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u></p> <p><u>4. -----</u></p> <p><u>----- 사람</u></p> <p><u>5. -----</u></p> <p><u>----- 이장-----</u></p>

〈신 설〉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공납금 수납완료일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 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리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추천) -----
----- 사람으로서 -----
----- 사람을 -----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
-----.

제4조(선발)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년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실적
2. 이장 근속기간 및 상훈
3.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군·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학생의 정원) ----- 연간
-- 이장 ----- 퍼센트-----
----- 범위에서 -----
-----.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공납금 수납완료일전 1월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 5. (생략)

<신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100만원 이내

제7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그 밖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② 읍·면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기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
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
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삭 제>

□ 「초·중등교육법(법률)」(2023.9.27. 일부개정·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법률)」(2023.6.9. 타법개정, 2023.7.10.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2023.6.30. 제정·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중학교”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나. 특수학교(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 다.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중 중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
3. “입학준비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군이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5조에 따른 대상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와 동일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 가.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 나. 가목에 따른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자녀를 양육하는 사람